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판매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기준」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판매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기준」

2. 제·개정 이유

- 판매장려수당 지급 대상 확대를 통해 금융기관의 주택연금 취급 유인 제고

3. 주요 제·개정 내용

- 소상공인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이 출시됨('25.4월)에 따라, 판매장려수당 지급대상을 주택담보대출 상환 금액에서 소상공인대출 상환 금액(주택담보대출+비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25년 5월 7일까지 (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
- 담당자(이메일) : 정다솜 대리 (1937@hf.go.kr)
- 전화번호 : 051-663-8477
- 팩스번호 : 0505-036-1320

첨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판매장려
수당 지급에 관한 기준」 개정 전후대비표 각 1부. 끝.

첨부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개정안 전후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4절 연금대출	제4절 연금대출	
제17조(판매장려수당) ① (생 략) ② <u>담보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로</u> 제16조의 개별인출금을 사용한 경우, 사용금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판매 장려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17조(판매장려수당)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15조제2항제1호, 제15조제2항 제3호, 제68조제3항 중 어느 하나의 용도로</u> 제16조의 개별인출금을 사용한 경우, 사용금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판매장려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소상공인 대출금액 지급 대상 추가
<u><신 설></u>	<u>부칙(7)</u> <u>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0월 00일부터 시행한다.</u> <u>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 판매장려수당 지급건부터 적용한다.</u>	부칙 신설

첨부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판매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기준 개정안 전후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2장 판매장려수당의 지급대상 및 산정	제2장 판매장려수당의 지급대상 및 산정	
제2조(판매장려수당 지급대상) ① (생 략) 1. (생 략) 2. 규정 제15조제2항제1호 <u>또는</u> 제68조 제3항의 용도로 개별인출금을 사용한 경우 <u><신 설></u> 3. (생 략) 4. (생 략) ② (생 략)	제2조(판매장려수당 지급대상)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규정 제15조제2항제1호, <u>제15조제2항제3호, 제68조제3항 중 어느 하나의</u> 용도로 개별인출금을 사용한 경우. <u>다만, 규정 제15조제2항제3호와 제68조제3항제2호 (이하 “소상공인대출금”이라 한다)의 용도인 경우 최초 보증신청일의 인출한도 설정금액 내에서 사용한 개별인출금에 한한다.(개정 2025. 0. 00.)</u>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소상공인 대출금액 지급 대상 추가
제3조(판매장려수당 산정방식) ① 판매장려수당은 규정 제15조제2항 제1호 <u>또는</u> 제68조제3항의 용도로 사용한 개별인출금에 판매장려수당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② (생 략)	제3조(판매장려수당 산정방식) ① 판매장려수당은 규정 제15조제2항 제1호, <u>제15조제2항제3호, 제68조제3항 중 어느 하나의</u> 용도로 사용한 개별인출금에 판매장려수당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다.<u>(개정 2025. 0. 00.)</u> 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비고
제4조(판매장려수당 지급률) (생략) 1. (생략) 2. 추가지급률 : 담보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의 채권자와 보증부대출을 취급한 채권자의 동일 여부 등을 고려하여 0.2% 이내에서 결정	제4조(판매장려수당 지급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추가지급률 : 담보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 또는 <u>소상공인대출금</u>의 채권자와 보증부대출을 취급한 채권자의 동일 여부 등을 고려하여 0.2% 이내에서 결정(<u>개정 2025. 0. 00.</u>)	
제5조(판매장려수당의 지급시기) ① 주택연금부장은 제2조제1항제4호의 철회기한이 경과한 보증에 대해서 <u>약정철회기한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휴무일인 경우 전 영업일)까지</u> 판매장려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해당사업 예산이 부족한 경우 약정철회기한이 속한 회계연도의 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매장려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22. 11. 25.) <u><신설></u> <u><신설></u> ② (생략) ③ (생략)	제5조(판매장려수당의 지급시기) ① 주택연금부장은 제2조제1항제4호의 철회기한이 경과한 보증에 대해서 <u>다음 각호의 기한까지</u> 판매장려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해당사업 예산이 부족한 경우 약정철회기한이 속한 회계연도의 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매장려수당을 지급한다.(<u>개정 2025. 0. 00.</u>) 1. <u>규정 제15조제2항제1호 또는 제68조 제3항제1호인 경우 : 약정철회기한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휴무일인 경우 전 영업일)까지</u> 2. <u>규정 제15조제2항제3호 또는 제68조 제3항제2호인 경우 : 개별인출금을 사용한 달의 다음 달 말일(휴무일인 경우 전 영업일)까지</u>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소상공인 대출금액 지급 대상 추가

현 행	개 정 안	비 고
<u><신 설></u>	<u>부칙(5)</u> <u>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5년 0월 00일부터 시행한다.</u> <u>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판매장려수당 지급건부터 적용한다.</u>	부칙 신설